

【논문】

## 포르노그래피, 자유주의, 페미니즘

주 동 료\*

【주제분류】 윤리학, 응용윤리학, 사회철학

【주요어】 포르노그래피,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 존 스튜어트 밀

【요약문】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주요 입장은, 비록 질이 낮은 표현물이라고 해도 포르노가 표현물인 이상 표현의 자유라는 이상이 제공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견해는 포르노와 성적 일탈 행위 사이에 있다고 가끔 주장되는 인과적 연결이 도덕적, 법적 제재의 근거가 될 만큼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경험적 주장, 그리고 타인들에게 명백한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관련적 영역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견(표현)과 행위의 절대적 주권자라는 밀적 규범적 전통에 입각해 있다. 본 논문은 포르노에 관한 제재의 최근의 유력한 입장인 MacKinnon/A. Dworkin의 입장을 검토하면서 (그들 자신의 견해와 달리) 자유주의에 대한 일부 해석 하에서 그들의 견해가 수용될 수 있음을 논증한다. 밀적인 이해(interest)와 피해(harm) 개념에 대한 광의의 해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밀이 『자유론』과 『여성의 예속』에서 말한 바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는 진정한 성인에게만 자유의 원리가 적용됨을 인정한다면 포르노에 대한 자유주의자의 관점은 절대적 제재 반대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일부 “성인” 남성이 완전 평등 하에서 본인/여성의 성에 대한 인식을 획득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반면에 포르노가 그들에게 (수용 가능한) 성행위에 대한 규범적 가이드 역할을 한다면, 현재 미성년에게 금지되는 이유와 같은 근거에서 그들에게도 포르노에 대한 노출이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 논문의 마지막 부분은 도덕적 문제점이 법적 제재로 이어질 경우 충족되어야 할 요건들을 제시한다.

---

\* 한림대학교 철학과

## I. 주제: 왜 자유주의인가

이 글은 자유주의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최근의 포르노그래피(이하 ‘포르노’로 줄임) 논의의 주요 쟁점들을 소개하고 필자의 의견을 개진한다. 논의되는 쟁점들은 주로 포르노의 **도덕적** 문제점들과 관련된다. 물론 포르노에 대한 **법적** 제재가 현금 논의의 가장 뜨거운 영역이다. 그러나 법적 논의에 동원되는 근거들은 대개가 도덕적 개념이나 원리들이다: 표현의 자유, 성적 자율성, 평등권 혹은 (필의) 피해의 원리 등. 따라서 법적 논의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도덕적 개념/원리들 각각의 의미, 적용 양태, 그리고 해당 사안(포르노)에서의 상대적 경중에 대한 규범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자유주의와 관련된 논의로 제한하는가.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최근의 영미 윤리학적/법적 논의의 주요 부분이 자유주의 내에서 포르노에 대한 규제가 시도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자유주의적 틀에 구애받지 않고 포르노에 대한 규제를 주장하는 페미니즘의 노선이 있다. 그러나 그 노선에 동조하는 일부 윤리학자들도 자유주의 내에서 그 규제가 수용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자유주의 내에서 수용 가능하다면 규제를 위한 주장은 더 많은 이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필자의 개인적 관심사가 자유주의 자체의 문제점들, 유연성, 변모의 방향, 가능성 그리고 변모되어야 할 이유에 있다. 이 점에서 포르노는 하나의 시금석의 역할을 한다고 보인다. 물론 자유주의가 변해야 한다면 이는 포르노 하나만의 문제 때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포르노는 자유주의의 유연성과 변모 방향을 시험하는 하나의 좋은 사례이다. 그것은 개인의 삶에 도덕적 평가와 국가의 제재가 개입할 수 있는 경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논점을 시사하면서, 일견 개인적 영역에서의 자유가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는 우리의 역량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sup>1)</sup> 셋째, 자유주의는 서구에서 (그리고 서구의 영향 하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사회이론이나 정치체제로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페미니즘의 편에서도 자유주의를 전적으로 무시하거나 자유주의에서 급하게 탈피하려는 것은 이론과 실천 양 측면에서 현명한 시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전적으로 오해 혹은 의도된 왜곡이지만 반-포르노 페미니즘이 전통적 보수주의와 연합했다거나 억압적 전체주의로 환원되었다는 주장을 상기하라.<sup>2)</sup>)

- 
- 1) 서구의 경우 법적 제재의 부재, 그리고 그 현상의 근거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포르노에 이르러서는 도덕적 비판이 효력을 잃는다는 생각에 반발하는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공격이 논쟁의 주축이다. 한국의 경우 하드코어 포르노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존재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규범적 효용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이러한 제재가 어떤 근거에 설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포르노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하는데 있어서도 원론적 검토는 선행되어야 한다.
  - 2) 예를 들어 Altman은 여성이 굴욕적 역할에 만족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포르노의 존재가 그것에 참여한 여성들 뿐 아니라 여성 일반이 평등한 지평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함을 인정하고 그런 포르노와 여성 참여가 없는 자유주의적 성적 모델이 통용되는 사회가 (그런 포르노와 여성 참여가 있는 사회보다) 더 낮다고 보지만, 동시에 그는 (여성-굴욕적) 포르노가 있는 자유주의적 사회가 전통적 성 모델이 지배하는 사회보다는 여성의 전반적 지위 향상에 훨씬 더 긍정적인 토양이라고 주장한다. (Altman, 233)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여성-굴욕적) 포르노의 제작과 감상이 자유주의적 성 모델이 획득한바 피임, 동성애, (3자 피해가 없고 동의한 성인들 간의) 혼외정사에 대한 권리와 동일선 상에 있는 개인적 (성적) 자율성의 일부분이라는 주장, 그리고 그러한 포르노를 금지하는 사회는 곧 전통적 (성차별적) 보수주의 사회로 회귀할 것이라는 정치사회적 이분법적 사고에 근거한다. 필자는 여성-굴욕적 포르노가 자유주의적 성 자율성의 측면에서 다른 개인적 권리의 영역들과 구분 가능하며, 그러한 포르노의 존재가 전통적 모델로 회귀하지 않기 위해서 “자유주의 사회에 사는 모든 여성들이 부담해야 할 대가”라는 주장은 그 포르노에 대한 선별적 규제를 포함한 자유주의적 사회 구성에 대한 과도한 비판주의, 그리고 규범적, 정치적 상상력과 정책 구성 가능성에 대한 좁은 시야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을 위한 이론적 정초의 일단을 제공하는 것이 논문의 후반 목표이다.)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글에서 개진될 필자의 잠정적 관점을 미리 밝혀두겠다. 필자는 포르노가 미성년에게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전혀 뉴스가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필자는 미성년에게 허용되지 말아야 하는 바로 그 이유에서 (일부) 포르노에의 노출이 (특히 남자) 성인에게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단 성인들도 접근하려는 포르노의 내용과 효과, 자신이 남과 여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에 “인도된 접근”(guided exposure)을 시도해야 하고, 사회는 그러한 인도를 받지 않은 접근(unguided exposure)의 위험을 경고하는 교육과 카운슬링 등의 기제들(“countervailing speeches”)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인도되지 않은” 접근의 발생 빈도가 늘어날 경우, 국가는 제재의 득과 실을 고려하여 법적인 제재도 시도할 수 있다. 그리고 필자의 논의가 일리가 있다면, 이러한 제재는 (벌과 같은) 일부 자유주의자들도 수용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변호될 수 있을 것이다.

## II. 포르노 규정의 문제

포르노를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그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점과 법적 제재의 정당성을 논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필자는 지금까지 제출된 그 어떤 정의도 ‘포르노그래피’라는 단어가 가지는 함의를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함의가 다양하기 때문이고, 포르노에 접근하거나 그것을 논의하는 사람들이 일부 함의에만 주목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나마 가장 포괄적 함의를 가지는 정의는 기술적(descriptive)인 정의일 것이다: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재현한 것” 혹은 “등장인물과의 친밀성이 없는 가운데 대부분의 사용자가 그 소통내용에 의해서 성적인 충동 혹은 만족을 추구하려는 것이 주요 사용 목적인 소통작품”<sup>3)</sup> 반면에 규범적(normative)인 정의에 의하

3) 후자는 Rea의 글에서 제시된 것임. 그 논문에서 포르노에 대한 다양한 규

면 미적 혹은 윤리적 가치의 부재 또는 일부 참여자 혹은 그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태도나 관점의 표현, 그 태도나 관점이 수행된 행위적 측면으로 포르노가 이해된다. (일부 “포르노”에 대한 긍정적인 규정도 있음.)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기술적 정의를 채택한다면 윤리적, 법적 비판과 제재의 근거가 사라질 것이고, (부정적) 규범적으로 정의된 포르노에 대해서는 비판과 제재가 “정의상” 정당화될 것이므로, 혹자는 포르노에 관한 (순수 개념적 논의 뿐 아니라) 윤리적, 법적 논의의 시작과 끝이 바로 정의(definition) 문제로 귀착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기술적으로 이해된 포르노—단지 노골적인 성적 표현물 혹은 순수 성적 목적으로 사용된 표현물—도 윤리적 비판과 법적 제재의 대상이라고 보기도 하고,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노골적 성행위—주로 이성애 행위(heterosexual acts)—에 보수를 받고 참여하는 여성들의 존재와 그 행위를 재현한 표현물의 유통 자체가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반영하기 때문에 제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 반면에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규범적으로 문제가 있는 관점과 태도가 표현된 포르노의 경우에도 그것을 (윤리적으로도 혹은 최소한)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필자가 정의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는, 첫째로 어떤 정의를 택하던 그렇게 정의된 포르노가 과연 윤리적,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를 논할 수 있는데, 정의에 따라 그 논의의 초점이 달라진다는 것이고 — 예를 들어 내용 자체의 음란성(obscenity), 포르노와 매춘의 관련성, 양성 성행위 자체의 남성 우위성 혹은 포르노가 표방하는 특정 여성(성)에 대한 왜곡과 성적 불평등의 고착 —, 그 초점을 이해하고 그것의 근거를 알아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규범적인 정의를 택할 경우, 비판자들이 말하는 포르노의 부정적 표상과 효과가 과연 존재하는지, 다시 말해서 비판자들이 주장하는바 규범적으로 부정적인 포르노 자체가 현실에서 존재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비

---

정들의 장단점이 잘 정리되어 있다.

판자들이 말하는 포르노의 부정적 인과적 효과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포르노는 정의로만 존재할 뿐 현실에서 부재할 경우, 부정적 규범적 정의와 논의는 포르노에 관한 오류이론(error theory)에 해당함.<sup>4)</sup>

이 글이 자유주의와 관련된 논의를 소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하에서 나는 부정적 규범적으로 이해된 포르노를 논의 대상으로 하겠다. 즉 포르노는 단지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물 혹은 주로 성적 관심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표현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부 참여자와 그의 성에 관한 왜곡된 관점이 담긴 표현물, (and/or) 그 관점이 수행된 행위이다. 특히 이 글의 후반부에서 주목되는 유형은 여성이 강제적 성행위의 말미에서 그 행위를 즐기고 동참하게 된다는 내용(the “positive rape outcome” scenario<sup>5)</sup>)을 통해 여성의 성적 경향에 관한 특정 태도를 부각하는 표현물 혹은 그것을 관찰하는 행위이다. 이 글의 논의는 그러한 포르노가 현실로 존재한다고 간주하겠다. 이는 필자 자신의 직관일 뿐 아니라 자유주의와의 논쟁은 그 현실적 존재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III. 자유주의 이전: 보수주의적 비판

보수주의자들의 포르노 비판은 음란성(obscenity)에 기초한다. 현금의 보수주의자들은 성행위 자체를 부도덕하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결혼 외적 성행위, 그리고 그 성행위가 노골적으로 재현된 표현물의 내용 자체가 “미풍양속에 반(反)한다”(contra bonos mores et decorum)고 보고, 그러한 표현물의 감상과 유통은 감상자들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킨다”는 근거에서 포르노를 비판한다. 그들에 의하면 포르노가 — 혹은 단지 노골적 성행위의 재현조차도 — 전통적 사회의 가치인 순

4) 이 가능성에 관해서는 West, “Pornography and Censorship”, section 1 참조.

5) Adams, 23-24.

결, 부부애 등을 와해시키고 사회적 도덕의 수준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도덕적/법적 입장들(종교적 성모럴, 자연법(natural law) 전통, 법적 도덕주의(legal moralism))은 물론 현재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입장은 포르노 논의의 전개에서 자유주의-페미니즘의 갈등 이전 단계에서의 주요 입장이었고, 자유주의가 그것에 대한 대항적 입장으로 출현한 것이므로 필자가 다루려는 논의의 전사(前史)에 해당할 것이다.

#### IV. 자유주의와 포르노 변호

자유주의자들은 보수주의의 포르노 비판이 잘못된 도덕관과 법의 이념, 그리고 무근거한 인과적 주장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로 칭해지는 다양한 입장들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개인의 자율성 혹은 개별성을 하나의 근본적 가치로 보고, “개인관련적 영역들”(self-regarding areas)에서 개인에게 (거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밀(Mill)적인 입장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 입장에서 포르노에 대한 논의의 기초를 구성하는 두 단계 주장, 포르노와 관련된 경험적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 1. 피해의 원리

밀에 의하면 개인과 국가/사회의 관계에서 후자가 전자에 강제를 행사할 때의 필요조건은 개인의 행위가 타인과 사회에게 “직접적이고 일차적인”(directly and in the first instance) 피해를 주거나 줄 경향이 강하게 예견된다는 것이다.<sup>6)</sup>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피해의 존재에 대한 믿을 만한 예측이 없다면 개인의 특정 행위와 상태에 대해서

6) Mill, *On Liberty*, 22-23, 25(이하에서는 OL로 줄임; 번역본을 기초로 필자가 수정한 부분들이 첨가됨).

법적 혹은 여론을 통한 제재가 주어지지 않 안 된다. 이는 우선적으로 제재의 이유가 제재를 받는 개인들의 행복일 수 없다는 말이다. (은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의 배제) 또한 밀이 말하는 ‘피해’는 타인들이 한 개인의 의견과 행위, 삶의 방식에 대해서 느끼는 단순한 불쾌감(offensiveness)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 누구에게라도 내가 줄 수 있는 부정적 느낌이 나에게 대한 제재의 근거가 된다면 나의 거의 모든 행위와 의견이 금지되어야 할 여지가 있으며, 내가 타인들에게 주는 불쾌감은 대부분 나와 교제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사라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

## 2. 의견/표현의 자유의 보장

이러한 관점에서 내면의 자유—양심, 사상, 의견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면의 상태 자체가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내면의 상태를 표현하고 발표하는 자유도 “거의” 절대적인 보호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표현 자체가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드물거니와 의견 **형성**의 자유와 의견 **발표**의 자유는 유기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OL, 26, 28) 자유주의 전통의 강한 특징들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부여하는 (거의) 절대적인 보장의 경향이다. 표현의 자유가 피해의 원리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소극적 주장 이외에 그것이 가진 적극적 가치는 무엇일까. 이 점을 확인하는 것은 포르노 논의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포르노가 피해 혹은 특정 가치의 후퇴를 가져옴을 인정하면서도 포르노의 법적 규제가 표현의 자유의 더 커다란 가치를 손상할 것을 두려워하여 규제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밀적인 전통, 그리고 다른 자유주의적 전통에서 표현의 자유에 부여하는 가치들: 진리 발견에서의 유용성(“marketplace of ideas”), 민주주의 체제의 운용에서의 필요성(정부비판, 집단적 숙고와 의사결정), 자율성 자체의 형성의 중요 핵



심이라는 점, 기타 공리들 산출에서의 기여.7)

### 3. 포르노와 성적 피해의 인과적 연결에 대한 증거

70년대부터 포르노의 감상과 감상자들의 성적 행태의 관련성에 대한 많은 조사와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sup>8)</sup> 자유주의자들은 대개 그 결과가 포르노의 유해성에 대한 어떤 일방적 결론을 뒷받침할 수준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성 범죄자들의 몇몇 고백에서 포르노의 영향에 대한 자기 주장들이 있고,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지만 어떤 표현물의 내용(파악과 감상) 자체가 특정 행위에 미치는 인과적 고리를 밝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에피소드적인 증언에 의해서 포르노가 법정에서 입증할 만한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판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반대편에서 포르노가 일부 감상자들의 성적 일탈에의 충동을 “안전하게” 해소하는 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주장, 그리고 포르노 규제가 심한 국가와 약한 국가 사이에 성 범죄의 비율 비교 등을 통해 포르노의 긍정적 인과적 기능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음.<sup>9)</sup>) 명백한 피해와의 인과적 연결의 입증

7) 이 가치들의 촉진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표현물은 표현의 자유에 의한 (법적) 보호에서 작은 목소리만을 가질 것이다. 밀 자신이 표현(expression)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인 토론(discussion)과 의견형성의 자유만을 노렸다는 (텍스트 해석상 필자가 보기에 부분적으로 타당성을 가지는) 지적에 관해서는 Vernon의 글 참조. 이 경우 포르노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자유가 보장되지만, 포르노 자체는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해당 표현물이 작가가 제시하는 내용과 관점으로 (그것에 대한 감상자의 이해를 매개로 하여) 감상자를 설득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내용과 더불어) 비인지적인 요소들을 통해 감상자의 특정 감정, 태도, 행위를 촉발/유도하려는 것인지가 중요한 차이라고 보인다. 후자의 경우 타인 관련적인 결과를 가질 경우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8) 그 결과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과 평가에 관해서는 Adams, Altman, Russell, West의 글들 참조.

9) 필자는 이러한 해석에 관해서 (부정적 인과적 주장만큼이나)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적 표현물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관용적인 일부 북유럽 국

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주의자의 기본 입장은 포르노는 하나의 “표현물”로서 그것에 합당한 대접—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나 관점과 상관없이 법적 보호의 대상임—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그 내용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감상하는 것은 그들의 “자기관련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그 내용과 그것에 의해 인도되는 감상자들의 성 관점과 삶의 스타일이 타인들의 눈에 “바보스럽거나 변태적이거나 … 저속하고 타락한 취미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여도(OL, 28, 104)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함은 불변이다. 포르노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훌륭한 표현물이라서가 아니가 (그 음란성과 저급함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하나의 비용이기 때문이다.<sup>10)</sup> 아래에서도 보겠지만 필자는 포르노와 감상자의 성적 행태 사이의 인과적 연관이 포르노에 대한 규범적 논의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개입하는 중요한 고리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어떤 내용과 암시를 주는 포르노가 문제인지, 또 어떤 피해가 문제인지, 즉 개별적 성범죄 행위에의 효과 아니면 특정 수준의 (자기 그리고 타자의) 성에 대한 이해를 가진 일반적 감상자들의 성행태에 대한 전반적 효과(가 타인들에게 다시 미치는 효과) 중 어느 것이 포르노의 인과적 파트너의 후보인지가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다.

---

가나 일본의 경우 미국보다 개별적 성범죄 기소율이 낮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는 허용되는 “포르노”의 내용—과연 그것이 여성이 굴욕적 상태를 즐기는 내용인지의 여부—, 폭넓은 성문화 자체의 차이, 그리고 법적 처리의 땅에 잡히지 않는 가족 내적, 심리적 성역할 관념에서 여성의 위치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포르노의 존재와 여성 지위에 대한 인과적 연결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은, 포르노가 금지된 사우디 등의 국가에서 여성이 더 차별받는다든 Altman의 주장에도 적용된다. 그 국가에서 낮은 여성의 지위는 —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 종교 문화적 배경 뿐 아니라 시민적, 법적 장치의 문제점에 기인할 것이다. (Altman, 230)

10) R. Dworkin, “Women and Pornography”의 논조임. 위의 각주 2에서 보았지만, Altman은 (심지어 여성-굴욕적인) 포르노의 존재가 자유주의적 성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라고 본다.

#### 4. 법적 제재와 “미끄러운 경사길”(the slippery slope argument)

어떤 자유주의자들은 일부 포르노가 여성에 대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관점을 담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자체로는 감상이 저지되는 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포르노와 그렇지 않은 (다른 종류의 “포르노” 혹은 비-포르노적인) 성적 표현물을 구분해 줄,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명확성을 가진 경계선이 없다는 점, 그리고 포르노의 여성 왜곡의 관점이 사실 우리 문화 전반에 널리 확산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서 법적인 제재에 반대한다. 그들에 의하면 명백히 문제가 있는 포르노에 대한 제재를 시도할 경우 불가피하게 다른 많은 성적 표현물, 통속적, 때로는 문학적으로 인정받는 소설/영화들, 여성에 대한 특정 시각을 암시/강화하는 드라마들, 심지어 일부 종교적 서적들도 금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합당성은 과연 문제적인 포르노로부터 우리가 금지되기를 바라지 않는 표현물로의 경사길이 과연 얼마나 “미끄러운지”, 혹은 우리가 그 경사길에 어떤 둔턱을 마련하여 법적 제재가 멈추어 설 수 있는 지점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에 달려있다.

#### 5. 여성의 자율성이 반영된 포르노의 가능성

그들이 모두 자유주의의 이념에 근거하지는 않지만 어떤 페미니스트들은 일부 포르노가 여성들이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로 참여하고 감상하는 대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작 과정에서 명백한 강요와 착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성이 자유의사로 (보수를 대가로) 참여한 포르노는 비록 그것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종속적 위치에 두더라도 그 여성의 결정과 성적 취향의 반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이러한 여성의 결정과 취향이 “사실은 조정과 억압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은 여성에 대한 지나친 선심성의 보호적/간섭적

(patronizing, paternalistic) 관점이다.<sup>11)</sup> (여성의 “No”가 “No”로 이해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여성의 “Yes”가 “Yes”를 의미한다고 취급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 입장과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반-포르노 페미니즘이 상당 부분 서로의 어깨 너머로 대화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이 입장에서 용인되는 “포르노”는 반-포르노 페미니즘의 주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학-피학(sado-masochism)적인 성행태까지도 여성의 성적 정체성의 일부일 수 있다는 점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성적 대상화(objectification)가 성차별 혹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억압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 입장과<sup>12)</sup>, (다른 극단에서) 이성애(heterosexuality) 자체가 성적 억압기제를 담고 있다는 입장은<sup>13)</sup> 성과 여성의 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 이견을 나타낼 수도 있다. 또한 억압적 성적 관점을 담은 표현물의 감상에 있어서도 그 효과가 반드시 일방적일 수 없다는 것도 반(反)규제 입장의 시사점인데, 과연 어떤 효과가 얼마만큼 확산되어야 법적

11) Cornell, Altman(231) 참조.

12) 포르노에 대한 옹호적 입장은 아니며 많은 부분에서 아래에서 나올 MacKinnon/(A)Dworkin 입장에 동조적이지만, 타인을 (성적으로) “대상화”(objectification)하는 상황들을 일곱 가지로 구분하고 그것들 사이에 친화적인, 하지만 개념적으로 필연적 연관은 아닌 관계만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Nussbaum의 논문을 참조. 일곱가지 “대상화”의 유형들: 도구화(instrumentality), 자율성의 부정(denial of autonomy), 비자발성(inertness), 대체가능성(fungibility), 신체 경계선의 침범(violability), 소유(ownership), 주관성의 부정(denial of subjectivity). Nussbaum에 의하면 도구화가 비인간적이고 일방적 형태로 나타날 때 도덕적으로 문제적이며, 다른 유형의 대상화들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 반면에 도구화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대상화들은 각각 그 자체로는 도덕적 결함의 (필연적인) 근거는 아니다.

13) 이성애가 성적 규범으로 당연/의무화하는 현상(“compulsory heterosexuality”)은 남성이 여성을 보호하면서도 억압하는 복합적 사회체제를 반영/강화한다는 여러 갈래의 주장들은 Tuana & Shrage의 글(23-27)에 소개되어 있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삽입행위 자체가 여성의 자율성, 행위주체성(agency), 사적 공간에 대한 침투로서 적대감과 노여움의 표현이라는 주장은 A. Dworkin의 *Intercourse*의 주제이다.

규제의 대상인지에 관해서도 이견의 가능성이 있다.<sup>14)</sup>

## V. 자유주의내적인 포르노 제재 가능성

자유주의적 틀 내에서 포르노에 대한 도덕적, 법적 제재를 옹호하는 가장 직접적인 주장은 포르노가 감상자에게, 혹은 포르노가 (부분적) 원인으로 작용한 감상자의 행위를 통해서 타인들에게 피해를 유발했다는 것을 보여줌에 근거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예가 MacKinnon/(A.)Dworkin이 1980년대 말에 미국의 몇몇 도시에서 시도한바 포르노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개인들이 그 피해의 보상을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조례(ordinance)라고 볼 수 있다.<sup>15)</sup> MacKinnon과 A. Dworkin(이하 M/D)은 자유주의자들의 이념과 수사에 의존하지 않는다.<sup>16)</sup> 그러나 그들의 주장—포르노가 피해

- 
- 14) 여성-굴욕적 행태와 관점을 배제하고 동등한 성 역할, 더 나아가서 여성적 관점에서의 능동적 성 향수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포르노’의 제작을 시도한 예로서 (전직 포르노 배우에서 Femme Production을 설립한) Candida Royalle의 자전적 기술을 참조. 그러한 표현물들이 ‘포르노’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상의 어려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만 양과 파급효과에서 기타 포르노물에 비해 미미하다는 현상 자체가 이미 고착된 (여성-굴욕적) 포르노의 효력을 말해준다.
- 15) 그 조례는 법원에 학대와 학대에서 포르노의 역할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례는 “포르노에 강제로 참여하거나 그것의 감상을 강요당한 개인들, 동의 없이 포르노에서 이용되어 명예가 실추된 사람들, 특정 포르노에 기인하여 폭행을 당한 사람들, 혹은 성에 근거한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포르노와의 접촉을 통해 중속당한 개인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자 한다. 조례 제정의 시도와 관련 (전문가, 피해 주장인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MacKinnon/(A.)Dworkin의 *In Harms' Way: The Pornography Civil Rights Hearings* 참조.
- 16) 특히 A. Dworkin은 좌파적 자유주의가 여성의 불평등과 이에 대한 포르노의 기여에 무감하여 그로부터 벗어난 과정을 여러 곳에서 웅변적으로 들려준다(*In Harm's Way*의 서문 “Suffering and Speech” 참조).

를 준다는 주장—이 수용된다면 포르노에 대한 그들의 노선(“civil rights approach”)은 자유주의적 근거에서의 포르노 제재로 연결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포르노에 의한 피해” 주장은 개별적인 성범죄에 인과적으로 기여한 포르노의 유해성뿐 아니라 포르노에 담긴 여성에 대한 관점과 그 관점을 수행하는 포르노의 기능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필자의 기본적 관심은 이러한 포르노의 전반적 여성(성) 왜곡과 억압의 주장을 자유주의적 틀 내에서도 수용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하려는 일부 윤리학자들의 시도이다. 따라서 이하에서 필자는 M/D 주장을 추종하는 (광의의) 자유주의적 시도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서 밀적인 자유주의의 기본 개념의 확장을 위한 시도, 그리고 보다 M/D의 주장에 밀착한 자유주의적 관점을 제시한다.

### 1. 광의의 이해(interest)/피해(harm)의 개념

밀 자신은 개인관련적 영역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자유의 근거를 공리의 원리에서 찾는다. 즉 그 영역에서 개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즉 온정적 의도에서 간섭하는 것보다) “인류에게 더 커다란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개입한 공리와 혜택의 개념은 단순한 즉각적 심리상태로서의 쾌락이나 현재적 욕구/관심의 충족이 아니다. 그것은 “진보적 존재인 인간의 항구적 이익에 기초한 광의의 공리”이다. (OL, 24) 『자유론』과 밀의 다른 글들을 참조한다면(예를 들어 『공리주의』 2장) 밀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의 경우 도모되어야 할 공리는 특징적 인간적 능력이 최대한 균형 있게 발휘되는 상태 또는 활동 그 자체이다. (그 상태와 활동의 결과 주어지는 특징의 쾌적한 심리상태만이 아니다.<sup>17)</sup>) 특히 한 개인에게서 발휘되면 그 자신에게 좋은 효과를 발하는 소질들을 찾고 개발하고 자주 발휘하는 상태(개별성)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개인적

17) 이러한 해석의 근거에 대해서는 필자의 논문 『밀의 행복 개념에 대한 객관주의적 해석』(『철학연구』 71집, 2005) 참조.

복지의 주요한 일부가 된다. 이러한 광의의 이해와 공리는 인간의 이해력과 실천력이 증진할수록 점점 더 (개인적, 집단적 차원에서) 그 요체의 많은 부분이 발견되고 향수될 것이다. **이러한 광의의 이해/공리가 손상되는 것은 (광의의) 피해라고 볼 수 있다.** “만약에” 여성의 경우 이러한 광의의 이해/공리가 포르노에 의해서 후퇴된다면 이는 일단 포르노에 대한 제재의 입장이 **출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sup>18)</sup> (이는 조건적 주장이다. 그리고 피해의 발생 자체는 제재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 2. 여성의 실제 이해(interest)

밀에 의하면 당시의 관점에서 소위 일컬어지는 여성의 본성은 그 주요 부분에서 구성된 것이다(“an eminently artificial thing”)<sup>19)</sup>. 여성의 종속은 많은 부분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종속 자체가 자연성(naturalness)을 가장하여 나타난다. 여성의 진정한 이해와 복지는 여성의 자율성과 남녀의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여성이 가지는 욕구와 관심의 내용과 충족에 의존한다. 우리는 (밀에 의하면 당

18) 포르노 논지에서 밀적 ‘이해’와 ‘피해’의 광의의 해석을 제시한 예로서 Dyzenhaus, Brison의 글 참조.

19) “상식과 인간 정신의 구성을 근거로, 나는 남녀가 현재와 같은 관계 하에서만 간주되는 한 누구도 남녀의 본성을 안다거나 알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 만일 여성이 남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남녀 혼성사회가 있었다면 우리는 각 성의 본성에 내재할지도 모르는 정신적 그리고 도덕적 차이에 관하여 무엇인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현재 이른바 여성의 본성이라 불리어지는 것은 현저하게 인위적인 것이다. 즉 어떤 방향으로든 강제로 억압되고 또 다른 방향으로든 부자연스러운 자극을 받은 것의 결과이다. 주저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연속계급도 그들의 주인공과의 관계에서 그들 성격의 자연적 균형이 그토록 완전히 왜곡되어 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 여성의 경우엔 오직 주인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한 몇 가지의 능력이 온실 속에서 줄곧 본성으로 가꾸어져 왔을 뿐이다.” (Mill, *The Subjection of Women*(이하 *SW*), 70-71: 번역본에 필자의 수정이 첨가됨.)

대에, 그리고 필자가 보기에는 현재에도)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 여성의 진정한 이해와 복지의 내용, 특히 성과 관련된 그 내용의 전모를 모른다. 여기서 “우리”는 물론 남성과 여성 모두를 지칭한다. 여성들 자신이 자신의 (성적) 이해와 복지의 진정한 내용을 모른다는 주장은 자칫 위에서 언급된바 여성에 대한 무지와 무시의 태도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성적 복지가 중요한 부분에서 상호적인 것이고, 아직 완전 평등 상태에서 여성이 남성과의 접촉과 반작용을 기대할 수 없다면 여성 자신도 자신의 성적 복지의 일부에 대해 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포르노가 종속적 성관계를 자연적인 것으로 가장하여 (특히 사적 공간에서) 여성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구성하는데 기여한다면 여성이 자신의 실제적 이해/공리를 확인하고 추구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이고 이는 자유주의적으로도 시정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 3. 포르노의 피해의 양태들

M/D의 주장대로라면 개별적 상황에서 포르노는 성범죄의 인과적 요인들 중 하나이다. 그들은 이 경우의 인과적 연결도 법정에서 증거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M/D가 정의내리는 바 언술(이자) 행위(speech act)로서의 포르노—제작자(pornographer)의 의견이 담긴 표현물(speech)이자 성적 종속 행위(act) 자체로서의 포르노—가 (주로) 집단으로서의 여성에게, 따라서 여성들 개개인에게—그들 중에는 포르노를 본 적이 없거나 본 사람에게 성범죄를 당한 적이 없는 이들도 있음—가지는 유해한 효과와 의미에 주목한다. M/D가 주목하는 포르노는 주로 여성이 자율성과 주관성이 상실된 채 단지 성적 대상으로 취급되거나 강간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즐기거나 쾌락으로 수용하는 개인으로 등장하는 것이다.<sup>20)</sup>

20) 이러한 포르노 규정과 이하에서 소개될 두 논증은 MacKinnon의 *Only Words*에서 강력하게 개진된다. 그 관점을 자유주의적 기조 내에 접목하려



## 1) 여성의 표현자유의 박탈(silencing): 표현 자유들 간의 갈등

이러한 포르노는 (최소한 일부) 감상자로 하여금 여성의 “No”를 “No”로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포르노에 의해서 여성(성)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형성한 사람들은 성적 접근과 접촉에 대한 여성의 거부를 거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No”라고 말함은 특정 사전적 의미를 가진 단어의 발화(locutionary act)이자 그 발화를 통해서 거부(refusal)라는 언술행위(illocutionary act)를 수행한 것이다. 포르노에 의해 자신의 여성관이 영향을 받은 남성들은 여성의 “No”가 수행하는 거부의 행위를 이해하는데 실패하고 혼동된 메시지를 받게 된다. (“illocutionary disablement”; “scrambling”<sup>21)</sup>) (이때 화자가 의도한바 청자에게서 불러일으키려는 효과—강압적 성적 접근과 접촉의 중단(perlocutionary force)—도 저지될 것이다.) 이 경우 여성의 언술행위는 성사되지 못했고 의사전달로서의 그녀의 표현도 저지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가 달성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이 주장이 표현의 자유가 함축하는 것을 오해한 결과라고 본다. 즉 표현의 자유는 엄격히 ‘소극적 자유’(a negative liberty)로서 언술행위 자체를 못하게 하는 타인의 개입이 없을 때 보장된다. 그것은 언술행위가 폭넓게 제대로 이해되고 성사될 것을 보장해야 존재하는 ‘적극적 자유’(a positive liberty)가 아니라는 것이다.<sup>22)</sup> 그러나 밀을 포함한 자유주의적 전통에서도 효과적인 표현의 자유가, 최소한 타인의 언술을 이해하려는 청중이 그 이해를 방해받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는 노선이 있다. 만약에 어떤 행위주체가 체계적으로 혹은 최소한 일정 정도의 확률로서 일부 청중의 이해를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면 국가와 사회는 이를 제재할 근거를 갖는다. 과거에는 정부 자체가 이러한 방해 주체

---

는 시도는 Langton, West의 글들에 의해 제출된다.

21) 이 개념들은 각각 Langton(274)과 West, “The Free Speech Argument Against Pornography”(403 이하)로부터 온 것임.

22) Green, R. Dworkin 참조.

였지만, 현대 (자유주의) 체제하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개인들의 언술 행위의 수행을 막는 강력한 비정부 방해 주체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막강한 경제적 규모를 갖고 그에 걸맞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포르노 업계는 이러한 통제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자유주의적 반-포르노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포르노는 소극적 표현의 자유들—자기 언술행위의 효과적 수행을 체계적, 확률적으로 저해 받지 않을 자유들—사이의 대결이다. 그들의 주장은 pornographer들의 표현의 자유와 여성의 성적 거부표현의 효과적 수행의 대결에 있어서, 규범적 중요성의 측면에서 후자가 우선한다는데 근거한다.)

2) 여성 종속의 고착행위(subordination)로서의 포르노: 표현의 자유 vs. 평등

M/D의 규정에 따르면 포르노는 여성의 성적 종속을 **재현/묘사**하는 표현물이자, 그 종속을 **수행하는** 행위 자체이다.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말—“흑인은 머리보다 성기가 강하다”, “흑인은 들어오지 말 것”—은 말이면서 단지 말(*Only Words*)이 아니라 차별 행위 자체이다. 부당한 차별, 존재하지 않는 차이를 주장하거나 존재하는 차이에 존재하지 않는 규범적 의미를 부여한 행위는 차별 주체와 차별당하는 개인 사이에 불평등을 조장한다. 이 불평등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집단적 차원에서 존재한다면 국가는 인종, 종교, 성에 근거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무 하에서 차별 주체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국가 활동에 대한 ‘자유방임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이다.) 여기서 자유와 평등의 충돌이 있게 된다. 다시 한번,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pornographer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보다 여성의 평등권이 규범적으로 더 중요하므로 국가는 이 경우 후자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 필자는 밀의 피해 원리가 포르노 제재의 윤리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밀 자신의 입장에서 논

한다. 이는 이미 언급된 광의의 피해 개념을 상정함과 동시에, 피해 원리가 적용되는 대상(‘진정한 성인’)에 대한 (필자가 보기에는) 보다 현실적 규정을 함에 의해서이다.

### 3) 포르노와 피해 원리의 적용: 인과적 추정의 문제로의 귀환

M/D의 입장을 구체화하려는 페미니스트들은 그들의 시도가 피해(harm)에 근거한 반-포르노 노선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보다는 자유주의에서 중추를 이루는 표현의 자유 자체가 반-포르노의 근거라고 보거나(the silencing argument), 자유주의에서도 도모되어야 할 주요 가치들 중 하나인 평등이 반-포르노의 이유를 준다고 생각한다(the subordination argument). 또한 그들은 반-포르노 노선을 괴롭혀 온 인과적 연결의 입증 부담에서 자신들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특정 포르노 작품과 특정 성범죄 사이의 인과적 연결을 증명할 필요가 없이, (M/D 식으로 규정된) 포르노 자체의 내용이 그것이 종속행위이자 여성을 침묵시키는 행위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행위 자체의 결합들이 반-포르노 이유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가 밀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많은 다른 철학적 전통에서 주장된 대로 개인적 이해와 복지를 넓고 복합적인 의미로 수용한다면—자율성과 더불어 여러 (인식적, 감성적, 미적, 실천적) 능력들의 균형 있는 발휘, 그리고 진정으로 내밀한 인간관계에의 참여—, 반-포르노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여성 침묵과 종속행위는 여성에 대한 중요한 피해를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러한 광의의 피해는 포르노의 여성 침묵과 종속행위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효과적으로 수행됨을 주장하려면 그 행위에 동참했거나 그 행위를 묵도한 결과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게 될 경우의 빈도와 확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록 다른 차원에서이기는 하지만 인과적 연관을 확보해야 할 부담은 여전히 남는다고 여겨진다.

포르노의 여성 침묵과 종속행위의 효과적 수행은 무엇을 의미하며, 반-포르노 주장에서 그것은 왜 필요한가. 어떤 개인이 “인간은 화성

인보다 저능하다” 혹은 “호모 사피엔스로서의 인간은 사실상 늑대인간의 노예이며 노예이기를 즐긴다”는 말을 하거나 그런 취지의 표현물을 발표했다고 해보자. 이러한 언술행위 자체가 왜 인간에 대한 침묵 혹은 종속행위가 아닌가. 혹은 그런 행위라면 왜 인간에 대한 피해를 구성하지 않는가. 필자는 그 이유가 대부분의 청자는 화자가 (아니 그 누구도) 인간과 화성인, 인간과 늑대인간 사이의 차이와 규범적 상관관계에 관한 권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언술행위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인간들—청자들— 자신의 자기 이해, 표현의 자유, 자긍심에 어떤 부정적 효과도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어떤 차별적 행위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서 해당 집단에게 피해를 구성하려면, 청자가 그 언술주체를 관련 사실과 규범적 판단에 대한 권위자이자 인도자(normative authority/guide)로 인정하여<sup>23)</sup> 그 언술행위 자체 혹은 그 행위에 담긴 관점을 반복 수행해야 한다. 그러한 의식적 이해에 기반하지 않는다 해도 청자들에게 그 행위와 관점이 강화되는 기타 기제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관점의 수용과 반복이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확산되는 정도에 비례하여 피해의 정도는 커질 것이다.) 필자는 포르노에 대한 권위적 이해—포르노가 성에 대한 정보적 권위이자 어떤 성행위가 행해져도 좋은지에 관한 규범적 가이드라는 이해—에 근거한 종속/침묵 행위가 확산될 개연성, 그리고 성적 만족과 쾌감을 동반한다는 특징 때문에 (다른 성 차별적 표현물보다 큰 정도로) 포르노에 의한 종속/침묵행위가 강화되고 감상 이후로 지속될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sup>24)</sup> 비록 특정 포르노 작품감상과 특정 성범죄 사이의 인과적 연결이 미묘한 동기적 실타래 속에서 가려내기 힘들다고 해도 M/D-유형 포르노의 미성년 감상자들에 대한 심리적/행태적 효과의 조사결과

23) 이 개념은 Langton(269 이하)으로부터 필자가 (재)구성한 것임.

24) 관점/내용 이해에 근거한 감상자의 효과보다는, 성적 쾌감이라는 강화제(reinforcer)를 통해 감상자의 심리 상태에 비합리적으로 작용하는 포르노의 ‘효과적 작동(operant conditioning)’ 과정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는 Scoccia 참조.

상당한 일관성을 보인다. 상당수 반복적 소년 감상자들에게 포르노는 성에 대한 정보의 가장 강력한 원천이며, 그들은 강간신화와 여성에 대한 강압적 성행위에 대해 더 수용적 태도를 보인다.<sup>25)</sup>

이러한 인과적 추정(causal guess)에 대해서도 반론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미 대부분 국가사회가 이러한 추정을 접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부분적으로 바로 이러한 추정 하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포르노에 대한 미성년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부 이유는 성 자체에 대한 너무 이른 노출에 있겠지만, 분명히 성에 관한 ‘잘못된 관념’의 형성도 한 이유를 구성한다고 보인다.) 밀 자신이 자신의 자유주의 이념—자기관련적 영역에서 개인의 절대적 주권—이 “성숙한 능력을 가진 성인에게만 적용된다”고 말한다. 미성년자들은 심지어 자기관련적 영역에서도 타인의 간섭과 제재를 받을 수 있다.<sup>26)</sup>

성행위는 “동의한 성인들” 사이에서 행해질 때 형식적으로 (밀적인 의미에서) 자기관련적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위에서 필자가 제시한 주장이 근거가 있다면 성인들도, 특히 남성 성인들은 성과 여성의 성

25) 이러한 통계의 요약된 보고로서 MacKinnon, “The Roar on the Other Side of Silence” (*In Harm's Way*의 서문) 23-24, fn70 참조. 전반적으로 반-포르노에 경도되었지만 포르노-강간의 인과적 연결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 발견의 분석으로 유용한 것은 Russell임. 심지어 반-규제 입장에 선 Altman조차 이러한 인과적 영향을 인정하지만, 포르노 규제가 함축하는 성적 자율성의 제한을 위해서는 인과적 추정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Altman, 231) 그러나 미성년에 대한 (여성-굴욕적) 포르노의 금지가 근거한 증거는 인간 일반의 심리와 성의식에 의존한 일반화이다. 필자의 주장은 (연령적) 성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일반적 추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26) “인류가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에 의해 개선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원칙으로서의 자유는 어떤 사태에도 적용될 수 없다.” (*OL*, 23) 이 언급은 사회적 발전 단계 뿐 아니라 개인적 발전 단계에도 적용된다. 밀이 이 단계가 “웬만한” 혹은 “가장 일상적인” 성인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 달성된다고 낙관하는 구절들이 있지만(*OL*, 92, 102-103), 원칙적으로 연령상의 성인들 중에는 (자신의 일부 능력과 성향, 인간관계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으로부터 배우지 못한 개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무지하다. 그들은 남-녀의 권리, 교육, 자기 개발, 그리고 ‘사적 공간’에서의 “완전한 평등”(perfect equality: 『여성의 예측』(SW)첫째 문단), 특히 성적 교섭에서의 완전한 동등관계 하에서 여성의 성적 경향과 정체성, 성적 복지의 내용에 대해 알게 될 기회를 갖지 못했다.<sup>27)</sup> 남성에게 이러한 인식은 궁극적으로 여성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자신에 관해 말하도록]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 자신들도 자신의 능력에 관해서 알지 못하다”고 본다면(SW 73), 일부 제한된 평등 공간에서 이러한 인식을 스스로 획득한 여성을 제외하고는 남성 일반에게 이러한 인식의 원천은 아주 빈약하다. 밑 자신의 견해대로라면 성에 관해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에 의해 단련을 받지 않은 일부 남성 “성인”들은 나이로는 성인이지만 아직도 성과 관련하여, 특히 여성의 성의 생리적,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 관하여 “성숙한 능력을 가진” 개인이 아니며, 그들이 아직도 포르노에 의존하여 성관념을 구성한다면 위에서 언급된 침묵/종속 행위의 확대 재생산은 (미성년에 포르노가 미치는 영향력과 동일한 정도로) 현실화될 것이다.

완전한 평등 상태 혹은 그에 접근한 상태에서 자신과 파트너의 진정한 성적 정체성과 성적 복지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

---

27) “참된 애정이 있다하더라도, 권위와 복종의 관계에서는 완전한 신뢰가 불가능하다. ... 서로에 대한 철저한 지식은 매우 친밀할 뿐 아니라 동등한 사람들 사이가 아니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은, 한편이 다른 편이 권위 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남편의 편안과 쾌락에 종속시켜 생각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내의 임무라고 끊임없이 주입 받아 온 아내의 경우엔 더욱 그러할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한 남성이 아내에 관한 철저한 지식을 얻는 일조차 방해하는 것이다. ... [여성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여성, 특정 계층과 국가의 여성, 특정 역사적 시대에 대한 여성에 대한 이해는 언제나 제한적이므로] 우리는 남성들이 여성들에 관하여 얻을 수 있는 지식, 여성들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는 덮어두더라도 그들의 지나온 길과 현재 상태에 대한 지식조차도 열악할 정도로 불완전하고 피상적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여성들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다하게 될 때까지는.”(SW 74-75)

기타 성과 관련된 결함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포르노의 내용과 관점, 그 언술행위 자체가 자신에게 미칠 효과를 알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개인들만이 존재한다면 포르노는 최소한 성과 관련된 사실적/규범적 권위와 가이드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성적으로도 매혹적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직 그 상태에 있지 않은 필자에게는 하나의 추측이다.) 그런 사람들이 아닌 자들의 포르노 접촉, 필자의 표현대로라면 관련 이해와 통제력에 의해 “인도되지 않은” 접촉은 (여성에 대한) 침묵/중속행위를 재생산한다. 이것도 도덕적으로 문제를 갖기에 우리의 일차적 목표는 사실 공적, 사적 공간에서 가능한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미 암시된 대로 그 실현의 가정 하에서 과연 M/D-유형 포르노가 완전히 사라질지는 (필자에게는) 미지수이다.) 포르노는 불평등한 성적 현실의 한 원인이자 그 징후이기 때문이다.<sup>28)</sup> 포르노와 현실은 서로를 반영하고 서로를 강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인도되지 않은” 포르노 접근을 가급적 줄이는 다양한 방안들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필 자신이 법적 제재가 필요한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이외에도, 타인에게 불필요한 손실이나 손상을 끼치는 행위와 일부 “비도덕적 악덕들”—잔인한 성향, 악의와 비뚤어진 성격, 타인을 압도하는 것에 대한 애착 등—에 대해 도덕적 보복과 처벌, 여론에 의한 처벌을 용인한다. 물론 “매질과 회초리” 이외의 방도를 먼저 사용하지는 단서와 함께: *OL* 102, 106) 우선적으로 포르노에 대항하여 그 효과를 상쇄하고 가능한 올바른 방향의 성적 교육과 정보의 확산을 도모하는 언술행위들(countervailing speeches)이 필요하다. 우리는 성적 행위가 진정 내밀하고 평등한 인간관계의 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

28) 폭력적/여성-굴욕적 포르노 감상이 성적 탈선행위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공통 원인(예를 들어 유-소년기에 형성된 폭력적 성향의 심리적 원인)에서 나온 두 결과라는 주장은 R. Dworkin(“Women and Pornography”, 38) 참조. 그러나 공통 원인의 두 결과(한 결과는 다른 결과의 징후임)들 사이에 추후에 인과적 강화와 촉진의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Brison, 241 참조.

식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성행위가 밀적인 의미에서 “자기관련적” 영역이 될 때까지 그것은 타인관련적 영역이고, 그 안에서는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광의의 피해를 주지 않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성적) 혜택의 공유를 추구하는 도덕과 사회적 규범이 가장 효과적으로 통용되고 내면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 VI. 법적 제재의 요건

포르노와의 “인도되지 않은” 접촉이 타인관련적 규범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가능한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논의결과이다. 그러나 법적 규제에는 특수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모든 행위들이 법적 규제의 대상일 수도 없으며, 법적 규제는 도덕적 고려에 직접적으로 입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비록 “인도되지 않은” 접촉이 유발하는 피해에 대한 인과적 추정이 인정되어도 법적 규제와 처벌에는 그 규제와 처벌이 다시 유발하는 비용과 부정적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포르노 정보/언술행위의 보급과 사회적 압력 이상의 법적 제재의 채택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도의 (예정적) 정보와 숙고가 필요하다. (전면적 금지나 처벌은 아니고 개별적 사안에서 포르노 관련적 피해를 보상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통로를 추구하는 M/D-유형 법안들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채택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sup>29)</sup> 그러나 민사소송의 판결도 법적 선례를 구성하게 될 것이고, 유권해석의 필요성 하에서 그 판결은 개별적 품목이 아닌 포르노라는 문화적 산물/

29) 포르노에 대한 다양한 법적 제재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로서는 Adams 참조. 그에 의하면, 범죄자를 처벌하면서도 그의 범죄를 방조한 이유로 슈퍼마켓의 주차장 조명을 충분히 밝게 하지 못한 가게 주인에게도 피해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을 묻는 것처럼, 포르노(제작/유통 주체들)도 성범죄에 대한 (범인을 무죄로 만드는 요소(exculpatory cause)로서가 아니라) 방조의 요인(incitement)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인간행태에 대한 금지/처벌의 한 형태이다.)

법적 제재의 채택여부는 (대부분) 제재가 노리는 긍정적 효과의 정도와 중요성, 그 효과가 발생할 개연성과 제재가 실시될 경우의 부정적 효과가 가져올 비용을 서로 비교하여 결정할 일이다. “인도되지 않은” 접촉의 해악이 인정된다면 관건은 위에서 언급된바 “미끄러운 경사길”의 우려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경사길 말미의 상황의 부정적 결과가 실제로 제재의 긍정적 효과를 압도하는지에 있다. 이 분야에서 필자의 의견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 그 추측에 의하면 M/D-유형 포르노를 가려내고 “인도되지 않은” 접촉을 확인하는데 완전을 기하려면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들 것이고 일부 규범적 비용도 발생할 것이다. (누가 성적으로 완전한 “성숙한 능력”을 가졌는지를 조사하려면 개인 사생활의 많은 부분의 노출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완벽한** 확인과 구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도의 확인과 구분을 수행하고 M/D의 조레 시도 정도로 경우에 따른 판결을 추구한다면 어떤 규범적 비용이 발생하는가.<sup>30)</sup> 한 가지는 일종의 성적 왜곡과 종속 효과를 가지지만 보호받아야 할 표현물들로의 제재 확산의 우려이다. (“chilling effects”) 그러나 이미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도의** 확인과 구분만이 시도된다면, 위에서 본 바 성적 쾌

30) 어차피 완전한 구분과 확인을 통한 제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포르노의 경우) 그렇다면 완전한 제재가 불가능하므로 제재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가. 그러나 부분적 제재도 때로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 부분적 제재가 방지할 수 있는 피해가 분명히 존재할 뿐 아니라 제재는 일정 사안에 대한 (민주적 숙고에 의해 확인된) 사회의 규범적 의사를 대중에게 알리고 숙지하게 하는 신호로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반-규제 이론가들이 (가설적으로나마) 어떤 형태의 포르노와 강간 신화의 심화 사이에 인과적 추정을 인정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완전히 배제하고 반-포르노 교육적 대응만을 고수하는 것(Skipper, 59; Altman, 229)은 문제가 있는 입장이다. 그 인과적 연관은 (때로는) 교육적 대응만으로는 고착/강화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포르노의 (성적 흥분을 동반한) 특수한 효력을 감안한다면 (때로는) 법적 제재가 더 효과적 대응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감을 통해서 강화되는 침묵/중속적 언술행위로서의 포르노와 일반 멜로드라마 사이에 경사길의 경사를 줄이거나 둔턱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인간의 판단능력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둘째로 부분적 제재도 일부 개인(pornographer)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축소한다고 주장될 수 있다. 하지만 포르노를 서사적 구성을 통해서 작가의 내용과 관점을 전달하는 표현물이라기보다는 (자위) 성행위의 보조도구나 자극체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거니와, 그것을 표현물로 인정하고 그러한 근거에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도 그것이 표현 자유의 적극적 가치(진리의 발견의 효율성, 민주적 비판과 집단적 숙고의 통로, 신념/가치 형성에서의 개인 자율성의 형성과 확장)의 측면에서 낮은 기여를 하는 표현(“low value” category of speech)이라는 점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그것은 광고물과 같은 수준에서, 공동체에서 인정되는 다른 가치들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반-포르노적 표현과 언술행위들의 활발한 증진과 더불어 이렇게 제한된 제재가 첨가된 형태가 M/D-유형 포르노에 대해서 지금 실시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라고 생각된다.<sup>31)</sup> (물론 법적 제재의 요건에 관해서는 필자가 지금 말한 것 이상의 정보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sup>32)</sup>

31) J. Cohen도 포르노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합당한 반응은 다음의 세 가지로 본다: 가정 내 성폭력 등의 성적 학대(sexual abuse) 행위 자체를 법적 처벌의 우선적 타깃으로 할 것; “반-포르노 교육/정보의 제공(more speech)” 전략, 그리고 M/D 형태의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포르노의 선별 규제. 그는 규제의 대상이 제한될수록 규제의 효과도 제한된다고 본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대로 제한된 규제도 일부 포르노의 도덕적 문제와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고, 그러한 포르노의 제작과 유통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교육적, 사회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32) 이 논문의 초고들은 <2005 학제간 워크샵: 젠더의 경계: 그 함의와 변화> (한국학술진흥재단 후원, 2005년 4월 30일, 한양대학교)와 <제453회 목요일 학세미나>(2005년 11월 10일, 계명대학교 철학과)에서 발표되었다. 최종 원고의 작성은 각 모임에서의 토론자들, 방청인, 학생들의 질문과 이어지는 토론에 많은 빛을 지고 있다.

## 참고문헌

- Adams, Don: "Can Pornography Cause Rape?"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31, 2000.
- Altman, Andrew. "The Right to Get Turned On: Pornography, Autonomy, Equality" in A. Cohen & C. Wellman eds. *Contemporary Debates in Applied Ethics*, Blackwell, 2005.
- Brison, Susan J. "'The Price We Pay?'" Pornography and Harm" in A. Cohen & C. Wellman eds. *Contemporary Debates in Applied Ethics*, Blackwell, 2005.
- Cohen, Joshua. "Freedom, Equality, Pornography" in A. Sarat & J. Kearns, eds. *Justice & Injustice in Law & Legal Theory*, Univ. of Michigan, Press, 1996.
- Cornell, Drucilla (ed.). *Feminism & Pornography*, Oxford UP, 2000.
- \_\_\_\_\_. "Pornography's Temptation" in D. Cornell, ed.
- Dworkin, Andrea. *Intercourse*, The Free Press, 1987.
- Dworkin, Ronald. "Women and Pornography" *New York Review of Books* 40-17, Oct. 21, 1993(MacKinnon의 *Only Words*에 대한 서평).
- Dyzenhaus, David. "John Stuart Mill and the Harm of Pornography" (1992) rep. in G. Dworkin, ed. *Mill's On Liberty*, Rowman & Littlefield, 1997.
- Green, Leslie. "Pornographizing, Subordinating and Silencing" in R. Post, ed.
- Langton, Rea. "Subordination, Silence, and Pornography's Authority" in R. Post, ed.
- MacKinnon, Catharine A. *Only Words*, Harvard UP, 1993(『포르노에

- 도전한다: 포르노, 표현의 자유인가, 성평등의 족쇄인가?, 신은철 옮김, 개마고원, 1997).
- \_\_\_\_\_. & Andrea Dworkin (eds.). *In Harm's Way: The Pornography Civil Rights Hearings*, Harvard UP, 1997.
- Mill, John Stuart. *On Liberty (OL)* (『자유론』, 김형철 옮김, 서광사, 1992)
- \_\_\_\_\_. *The Subjection of Women(SW)* (『여성의 예속』, 김예숙 옮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6)
- \_\_\_\_\_. *Utilitarianism*, Macmillan, 1957.
- Nussbaum, Martha. "Objectification"(1995) rep. in her *Sex and Social Justice*, Oxford UP, 1999.
- Post, Robert C. (ed.). *Censorship and Silencing: Practices of Cultural Regulation*, The Getty Research Institute, 1998.
- Rea, Michael. "What is Pornography?" *Nous* 35, 2001.
- Royalle, Candida. "Porn in the USA" in D. Cornell, ed.
- Russell, Diana H. "Pornography and Rape: A Causal Model" in D. Cornell, ed.
- Scoccia, Danny. "Can Liberals Support a Ban on Violent Pornography?" *Ethics* 106, 1996.
- Skipper, Robert. "Mill and Pornography" (1993) rep. in G. Dworkin, ed. *Mill's On Liberty*, Rowman & Littlefield, 1997.
- Tuana, Nancy & Laurie Shrage. "Sexuality" in H. LaFollette, ed. *Practical Ethics*, Oxford UP, 2003.
- Vernon, Richard. "John Stuart Mill and Pornography: Beyond the Harm Principle" *Ethics* 106, 1996.
- West, Caroline. "the Free Speech Argument Against Pornography"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33, 2003.
- \_\_\_\_\_. "Pornography and Censorship"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plato.stanford.edu>

**ABSTRACT****On Pornography**

## The Possibility of Sanctions within Liberalism

Choo, Dong-Ryul

Pornography is one of the test cases for verifying the validity and flexibility of liberalism as a form of normative theory. The official line of liberal responses to pornography is “‘the price we have to pay’ to keep free speech.” This response is based on Millian principles of liberty and harm, and also on the reluctance to accept the reality of causal connection between pornography and sex crimes.

This paper presents a defense of the possibility of moral sanctions against pornography while being within the bounds of liberalism. For this purpose we firstly need a broad, but still liberal interpretations of Millian ideas of “interest” and “harm”, which correspond to what can promote or frustrate one’s capacities for the genuine elements of well-being (autonomy, understanding, intimate and equal human relationships, and aesthetic sensibilities). We also need to recognize the fact that for some adult men their ideas of male/female sexuality and acceptable sexual behaviour come not from “free and equal discussion”, but from pornography. In matters of sexuality, they are not “human beings in the maturity of their faculties” to whom Millian principles of liberty and harm apply.

The last part of the paper discusses the conditions of *legal* sanctions against pornography which go beyond its moral problems and which can mitigate the concerns based on the slippery slope effects of legal prohibition.

**Keywords:** Pornography, Liberalism, Feminism, Sexuality, John Stuart Mill